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

발의연월일: 2020. 6. 4.

발 의 자: 강기윤 · 엄태영 · 박덕흠

구자근 · 김희국 · 윤영석

이 용・추경호・박성중

성일종 • 유경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실적이 미미하여 현행법상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금지원)	1 • 2	(생	제12조(자금지원)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 중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
			용하도록 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정부는 제3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